

03

지역연계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지원 사업

목적

- ① 학교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기반 마련
- ② 학교 밖 교육기관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숙려제 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

지정현황

지역	기관명	특화사업	연락처
전주	가름통합예술 교육연구소	음악 (Midi+밴드)	063-224-0316
	나무사랑가구	목공교실	010-6611-4162
	마음상담코칭센터	원예치료상담	063-228-5936
	사단법인 창의예술연구회	조형예술테라피 (공예,요리)	010-4811-7405
	싹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진로체험	063-225-1400
	아중리맘공동체	제과·제빵, 요리, 커피	010-3682-3117
	움티학교	음악(아쿠스틱밴드)	063-285-4344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063-903-7179	
익산	동지아동극단	심리상담	010-4656-3773
	모꼬지공예문화개발원	문화예술창작	010-7160-3307
	예술심리상담센터 마음길	심리상담	063-855-1275
	예품대한인재양성 교육개발원	문화예술창작, 진로체험	063-858-0798
군산	군산공예협동조합	문화예술창작	010-2900-1455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우리 아이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동참해 주세요!

학업중단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04

학업중단숙려제 Q & A

✓ 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교는 대상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지만, 학생은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있나요?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 유학, 인정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폭력·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학업중단숙려제 1회 사용 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학업중단숙려제 1회 실시 후 숙려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실시할 때와 같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후 내부결재를 득하고 당해 학년도 숙려기간 허용 범위(7주)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숙려제를 연장하는 경우 앞에 이어 같은 횟수로 처리합니다.

✓ 장기 결석생이 자퇴(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숙려제의 시행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기 결석한 학생도 숙려기간을 두어야 합니다(미인정결석 연속 7일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아 학교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기관에서는 학업중단 후 학습 및 취업, 복교에 관하여 자세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복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전북교육



학업중단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01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담,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운영기간 최소 1주 ~ 최대 7주까지(주 단위 운영), 당해 학년도 2회

적용 대상

①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유예 신청서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휴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②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발견했거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으로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기타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

위기 원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상담·치료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등
	진로상담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등
학교 부적응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기타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문화·예체능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여행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기타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등

운영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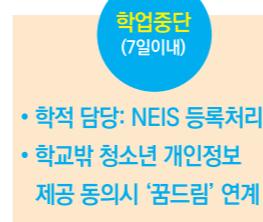
- ▶ 대상 발생 → 숙려제 안내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 학업중단 의사표현 학생, 학업중단 위기 포착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누적 30일 이상 학생 포함)
 - 학생·학부모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 숙려제 동의 → 숙려제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 대상자별 '실시 계획' 기안
 - 교내, 교외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외부기관 의뢰 시 요청공문 발송
 - 상담 또는 프로그램 실시(주 2회 이상)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현황 NEIS 등록

- ▶ 결과 처리
- 외부기관 운영 시 운영결과 확인
 - 숙려기간 출결처리
 - 대상자별 '실시 결과' 기안
 - 숙려제 대상 학생 등록(7일 이내)



• 상담 담당: 학교적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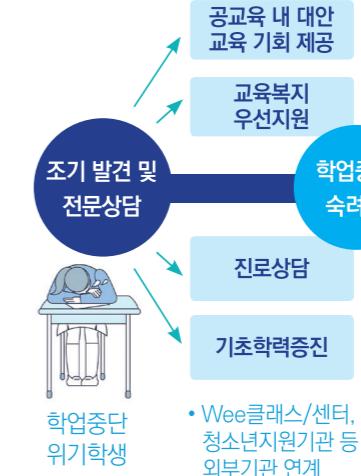
- 학적 담당: NEIS 등록처리
- 학교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꿈드림' 연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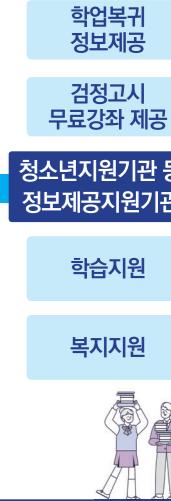
나이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

추진배경

(학교) 학업중단 예방



(교육청) 학업복귀 지원



학교와 교육청의 대상학생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기반 구축

업무처리절차

학업중단 학생정보 등록

나이스-학적 대상학생 학업중단처리



학업중단 학생등록 관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출력 및 대상학생 동의서 제공



학업중단 학생등록 관리 학업중단 학생 등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첨부)



대상 학생 등록 즉시 마감 및 제출 관리 마감처리 및 교육청 전송



숙려제 학생정보 등록

숙려제 학생등록 관리 숙려제 학생정보 등록



상위기관 요청 시 마감 및 제출 관리 기준일 설정



마감 및 제출 관리 대상자 수 등록



마감 및 제출 관리 마감처리 및 교육청 전송



•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 동의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연계 가능)